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75

2020. 3. 12.(목)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허창원 의원 등 6인

나. 발의일자 : 2020년 3월 4일

다. 회부일자 : 2020년 3월 5일

라. 상정일자 : 2020년 3월 12일

- 제3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허창원 의원)

가. 제안사유

O 서예의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해 충청북도 도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O 서예와 서예교육에 관한 정의 (안 제2조)

- O 서예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 O 서예교육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안 제5조~제6조)
- O 서예진흥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안 제7조)
- O 서예진흥을 위한 법인·단체의 지원 (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김보흠)

- 이 조례안은 지난 2018년 12월 11일에 제정된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서예진흥법」)에 따라 충청북도 서예진흥과 교육을 위한 것으로
- O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 서예와 서예교육에 관한 정의, 서예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2조~제3조)와
 - 서예교육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안 제5조~제6조) 및 서예진흥을 위한 법인·단체의 지원(안 제8조)에 대해 규정을 하였음.
- 현재「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한 시도는 경기도와 전라북도이며 앞으로 서예진흥을 위한 조례제정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O 한국 서예는 디지털문자영상시대 도래와 더불어 공교육에서 서예를 방치한 결과 작품수준의 저하는 물론 서예인구의 고령화, 학교 현장에서의 서예교육 부재 등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으며 특히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영화음악, 만화, 애니메이션 출판 방송 인쇄 공예 등각 분야에 대한 진흥법이 각각 제정되고 이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서예 분야에 대한 시책이나 지원은 거의 이루

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조례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 론 요 지: "생략"
-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O 「충청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 375 호
의 결	년 월 일
연월일	(제 회)

충청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허창원 의원 등 6인
발의연월일	2020년 3월 4일

충청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허창원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5 발의연월일 : 2020년 3월 4일

발 의 자 : 허창원, 전원표, 송미애,

연철흠, 이옥규, 정상교

1. 제정 이유

○ 서예의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해 충청북도 도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 기 위하여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O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예와 서예교육에 관한 정의(안 제2조)
- O 서예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 O 서예교육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안 제5조, 제6조)
- O 서예진흥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안 제7조)
- O 서예진흥을 위한 법인·단체의 지원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나. 관련부서 협의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산업과와 협의함.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 2020. 1. 29. ~ 2020. 2. 18.(20일간)

충청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의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도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준용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도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른 서예진흥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

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서예교육의 지원) ① 도지사는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 를 위한 시설·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 영하는 기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도지사는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 다.
- ② 도지사는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 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강의료와 수당
- 2. 교육 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
- 3.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
- 4. 그 밖에 도지사가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도지사는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 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서예의 해외 홍보 및 마케팅
- 2. 국내외 서예 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 3. 서예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조사·연구·학술교류 및 출판 지원 사업
- 4. 그 밖에 서예 진흥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 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단체의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서예문화를 육성·발전시키는 사업
- 2. 우수한 서예가를 발굴·육성·활용하는 사업
- 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 5. 그 밖에 도지사가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법인·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서예"란 문자를 중심으로 종이와 붓, 먹 등을 이용하여 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시각예술을 말한다.
- 2. "서예교육"이란 학교와 사회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6조(서예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제4항 제1호

○사 유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 계서 작성을 생략함.